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86%가 제조업으로 사실상 산업단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 집적지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산업

시설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업종 입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
조제16~1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로 2023. 12.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
o.kr](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팩스 : 044-201-5564)